

심사보고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52
----------	-----

2024. 9. 11.(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9월 4일

-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처리 개시일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이 규약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함
-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함
- 별표 1의 12-나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이 개정규약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²⁾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사무처리 개시일 변경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종합 검토의견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사무처리 개시’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처리 개시 기준이 되는 의회 개원일은 2024년 10월 말 또는 12월 16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실무적 검토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결과를 반영하여

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2618 (2024. 5. 2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 통보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한다.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개시 전까지 변경한다.(이행 기간 : 2024. 11. 30.까지)
※ (조건의 사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의 헌법·법령 규정 취지 위배 및 혼선 우려
※ 이행 기간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약 효력 소멸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의회 개원이 완료되어야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별표 1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 중 제12호나목의 개정은 규약 제정 당시부터 잘못 인용한 법률 규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
- 이 규약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이행 기간(2024. 11. 30.)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420회 임시회(9. 2. ~ 9. 11.) 또는 제421회 임시회(10. 10. ~ 10. 18.)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652
----------	-----

제출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 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처리 개시일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이 규약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 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함
-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 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 로 변경함
- 별표 1의 12-나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

3. 규약 개정안 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 규약 전문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사항

- 합 의 :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대전·세종·충북·충남 시·도
- 행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2024. 7. 1.(월) ~ 7. 22.(월))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충청광역연합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광역연합” (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 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과 그 밖에 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 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임시회에 상정한 연합의 조례안을 임시회 소집 이전 구성단체의 장이 입법예고를 한 경우 연합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p>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라.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철도 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7조(지정절차 및 관계 기관 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각 구성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본구상 확정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기본구상 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사업기본계획 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 및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 분담분 예산 반영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2조(예산 확보) 9.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5조(사업비 정산)
<p>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p> <p>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p> <p>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p> <p>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p> <p>※ 광역간선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p>
<p>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p>	<p>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개발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무</p> <p>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무</p> <p>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p> <p>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무</p>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p>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p>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p>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p>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p>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p> <p>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p>

구 분	처 리 사 무
	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분	처 리 사 무
	<p>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p> <p>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p>
<p>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p>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p> <p>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p>
<p>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p> <p>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p>
<p>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p> <p>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p>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무</p> <p>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관리에 관한 사무</p>
<p>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p>	<p>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관한 사무</p>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p>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p> <p>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p> <p>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p> <p>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p> <p>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p> <p>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사무</p> <p>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p> <p>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p> <p>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p> <p>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p> <p>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p> <p>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p> <p>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p> <p>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p>

구 분	처 리 사 무
	<p>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p> <p>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p> <p>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p> <p>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p> <p>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p> <p>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p> <p>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u>충청지방정부연합</u>” (이하 “<u>연합</u>” 이라 한다) 이라 한다.</p>	<p>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u>충청광역연합</u>” (이하 “<u>연합</u>” 이라 한다)이라 한다.</p>
<p>부칙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u>고시 후 6개월 이내</u>로 한다.(생략)</p>	<p>부칙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u>2024년 12월 31일 이내</u>로 한다.(생략)</p>
<p>[별표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p> <p>1. ~ 11. (생략)</p> <p>12. <u>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u></p> <p>가. (생략)</p> <p>나.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5조에 따른 <u>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u></p>	<p>[별표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p> <p>1. ~ 11. (생략)</p> <p>12. <u>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u></p> <p>가. (생략)</p> <p>나.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른 <u>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u></p>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 2024.5.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 지방정부연합” (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 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임시회에 상정한 연합의 조례안을 임시회 소집 이전 구성단체의 장이 입법예고를 한 경우 연합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p>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라.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철도 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7조(지정절차 및 관계 기관 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각 구성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본구상 확정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기본구상 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6조(사업기본계획 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 및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 분담분 예산 반영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2조(예산 확보) 9.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5조(사업비 정산)
<p>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p> <p>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p> <p>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p> <p>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p> <p>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p>
<p>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p> <p>※ 광역간선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p>
<p>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p>	<p>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p> <p>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개발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무</p> <p>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무</p> <p>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p> <p>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무</p>
<p>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p>	<p>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p> <p>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p> <p>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p>

구 분	처 리 사 무
	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분	처 리 사 무
	<p>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p> <p>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p>
<p>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p>	<p>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p>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p> <p>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p>
<p>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p> <p>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p>
<p>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p> <p>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p>
<p>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p>	<p>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무</p> <p>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관리에 관한 사무</p>
<p>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p>	<p>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관한 사무</p>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p>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p>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p> <p>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p> <p>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p> <p>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p> <p>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p> <p>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p> <p>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p> <p>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p> <p>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p> <p>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p>

구 분	처 리 사 무
	<p>사무</p> <p>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p> <p>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p> <p>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p> <p>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p> <p>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p> <p>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p> <p>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p> <p>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p> <p>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p>

구 분	처 리 사 무
	<p>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p> <p>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p> <p>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p> <p>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p> <p>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p> <p>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p> <p>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